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[제출용]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등기번호 | 620267 | |
| 등록번호 | 110111-6202678 | |
| 상 호 |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| . . . |
| 본 점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, 6층(개포동, 서울강남우체국빌딩) | . . . |
| 공고방법 |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| . . . |
| 1주의 금액 | 금 5,000 원 | . . . |
| 발행할 주식의 총수 | 50,000,000 주 | . . . |

|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| 자본금의 액 |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발행주식의 총수 26,713,858 주 | 금 133,569,290,000 원 | 2020.01.22 변경 |
| 보통주식 26,713,858 주 | | 2020.01.22 등기 |

목 적

회사는 '부동산투자회사법' (이하 '부투법' 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.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.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

1. 부동산의 취득. 관리. 개량 및 처분
1. 주택건설사업
1. 부동산의 개발사업
1. 부동산의 임대차
1. 증권의 매매
1. 금융기관에의 예치
1. 지상권.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. 관리. 처분
1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. 관리. 처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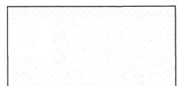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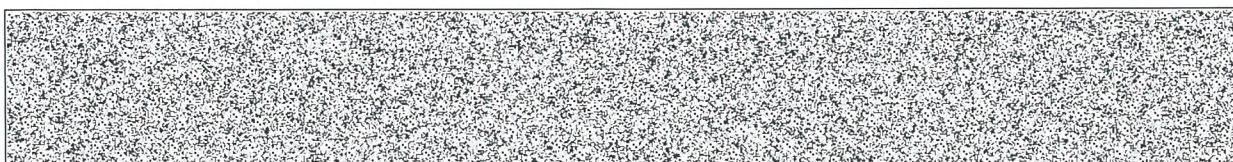
임원에 관한 사항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기타비상무이사 김성배 780609-***** | 2017년 12월 15일 취임 | 2017년 12월 19일 등기 |
| 사내이사 한경선 800125-***** | 2019년 10월 10일 취임 | 2019년 10월 17일 등기 |
| 대표이사 한경선 800125-***** | 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 64, 6동 903호(포일동, 인덕원삼호아파트) | |
| | 2019년 10월 10일 취임 | 2019년 10월 17일 등기 |
| 기타비상무이사 김기천 770112-***** | 2019년 10월 10일 취임 | 2019년 10월 17일 등기 |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11501040225010001131000120072612005276310101M0I1S1 1 발행일:2020/03/10

발급확인번호 2676-AAUB-OQAR



| | |
|------|--------|
| 등기번호 | 620267 |
|------|--------|

감사 양현승 710630-*****
2020년 03월 03일 취임 2020년 03월 06일 등기

기 타 사 항

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
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

1.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
2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
3. 합병
4. 파산
5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
6.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
7.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
8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

회사성립연월일 2016년 10월 14일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
설립 2016년 10월 14일 등기

수수료 1,000원 영수함 --- 이 하 여 백 ---
관할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
서기 2020년 03월 10일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

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(변경,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*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발급확인번호 2676-AAUB-OQAR

11501040225010001131000120072612005276310101M011S1 1 발행일:2020/03/10

- 2/2 -

